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아르메니아 공화국(Republic of Armenia)
2. 수도 : 예레반(Yerevan, 109만명)
3. 인구・면적 : 297만명(2021년), 29,800㎢(한반도의 약 1/7)
4. 공용어 : 아르메니아어
5. 1인당 GDP : 4,605달러(2019년)
6. 독립일 : 1991. 9. 21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❍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Armenia

2. 연혁

❍ 1995. 7. 5. 헌법 제정
❍ 1997. 12. 9. 헌법재판소법 제정
❍ 2005. 11. 27. 헌법 개정
❍ 2006. 7. 1. 헌법재판소법 개정
❍ 2015. 12. 6. 헌법 개정
❍ 2018. 1. 17. 헌법재판소법 개정

3. 구성(헌법 제166조, 헌법재판소법 제2장, 제3장)

❍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, 부소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❍ 재판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3/5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, 9인의 재판관 중 대통령 추천 3인, 정부 추천 3인, 법관총회 추천 3인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중임 또는 연임 불가
○ 직무수행 종료를 원하는 재판관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,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지함(헌법재판소법 제12조)
○ 재판소장(헌법재판소법 제19조)과 부소장(헌법재판소법 제20조)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6년이고 재선될 수 없음
○ 헌법재판소장 부재시 부소장이 한시적으로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, 재판소장과 부소장의 부재시 재판소장의 직은 재판관 중 연장자가 대리(헌법재판소법 제18조)
○ 재판관 자격 :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15년 이상 전문 법조인으로 종사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아르메니아 공화국 시민(헌법재판소법 제4조)
○ 재판관은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못함(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, 헌법재판소법 제4조)
○ 재판관은 어떠한 지시를 요청하거나 받지 않으며, 재판관의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금지하여 인적 독립성 확보(헌법재판소법 제7조)
○ 재판관은 신분이 보장되고, 면책특권을 가짐(헌법재판소법 제8조, 제9조)

4. 권한(헌법 제168조, 제169조)

① 법률, 국회의 결의, 대통령령 및 대통령 행정명령, 정부와 수상의 결정사항, 2차 규제적 법령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청구권자 : 대통령, 국회의원 1/5, 정부, 지방자치기관, 규제적 법령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2장에서 규정한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국민(관련 사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함),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되는 규제적 법령의 위헌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 경우 당해사건 법원

② 헌법 개정안 채택 전 또는 국민투표에 부의된 법률안 채택 전 해당 초안의 헌법 합치 여부 심판
- 청구권자 : 국회

③ 비준 전 국제조약에 명시된 의무조항의 헌법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청구권자 : 정부

④ 헌법기관 간의 헌법적 권한에 관한 쟁의 심판
- 청구권자 : 국회의원 1/5, 대통령, 정부, 최고사법위원회, 지방자치기관
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
- 청구권자 : 국회의 일부,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, 대통령 선거 후보자, 국민 발안에 따라 국민투표에 입안된 법률안의 권한 있는 대표
⑥ 국회의원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
- 청구권자 : 국회의원 1/5, 국회의 위원회
⑦ 대통령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
- 청구권자 : 국회(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)
⑧ 대통령의 직무수행불능 여부 확정
- 청구권자 : 정부
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징계책임에 관한 문제의 결정
- 청구권자 :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이상
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
- 청구권자 : 국회(국회의원 3/5 찬성에 의해)
⑪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형사소송 제기에 대한 동의 또는 재판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자유 박탈에 대한 동의 여부 심판
- 청구권자 : 정부, 검찰총장
⑫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정당 활동의 정지 또는 금지에 관한 심판
- 청구권자 : 국회(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), 정부

5. 심리 및 결정

○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(session)는 헌법재판소 소재지인 예레반에서 개최함. 필요시 절차적 결정을 통해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 다른 지역에서 개정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2조)
○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제반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(헌법재판소법 제32조)
○ 청구인은 본안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청구를 철회할 수 있음.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이 공공의 이익에 연관될 경우에는 철회를 거절 할 수 있음

(헌법재판소법 제30조)

❍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유형으로는 결정(Decision)과 의견(Opinion)이 있음. 권한 중 ⑦의 경우에만 의견을 공표하고 그 외에는 결정을 선고함(헌법 제170조)

❍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결정은 모두 최종적이며, 공표(선고)시 효력 발생

❍ 본안 사건의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과반수이며, 다음의 경우에만 재판관 2/3 이상임

- 대통령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(권한 ⑦)
- 헌법재판관의 권한 종료 여부에 관한 심판(권한 ⑩)
- 정당 활동의 정지 또는 금지에 관한 심판(권한 ⑫)

❍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시 해당 법령이 폐지되는 장래의 시점을 정할 수 있음(헌법 제170조 제3항)

6. 연락처

❍ 주소 : 10, av. Marshall Baghramian 375019 Yerevan Armenia

❍ 전화번호 : +374 10 58 81 30

❍ 팩스번호 : +374 10 52 67 64

❍ 홈페이지 : http://www.concourt.am/

※ 출처 : 아르메니아 헌법
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법
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
(2021년 5월 작성)